

1. 개정 이유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운영 사업장에 대한 방지 시설 운영기록부 관리 규정을 정비하고, 오존 주의보 해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장에서 혼선이 있는 조문·용어의 명확화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

2. 주요내용

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운영 사업장의 운영기록부 기록·보존 의무 규정 정비(안 제36조제2항)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측정결과를 관제센터에 전송하는 방지 시설의 경우 운영기록부 기록·보존 의무를 같음할 수 있도록 함

나.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서 확인 규정과 관련하여 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안 제66조제3항제4호)

-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에 따라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청 제도가 농업기계 검정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인용조문을 현행화

다. 오존 주의보 해제기준 정비(별표7)

- 오존 주의보 발령기준과 해제기준이 동일(0.12ppm)하여 발령과 해제를 반복 하는 비효율적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해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해제기준 : 현행 0.12ppm 미만 → 개선 0.10ppm 미만)

라. 조문 해석이 모호한 용어를 정비

- 1) 비산배출 업종별 시설관리기준 준수여부 점검 내용 중 “기타”를 “옥내 및 야외도장”으로 명확화(별표 10의3)
- 2)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 비교 내용 중 “경우 밋”을 “경우이거나”로 명확화(별표 11)

3)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사업 내용 중 “반출입이 함께”를 “반출 또는 반입”으로 명확화(별표 13)

4)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내용 중 전력사용량의 단위 “(kw/h)”를 “(kwh)”로 명확화(별지 제7호서식)

마.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행정처분 대상 행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모범이 개정(‘26.3.17)됨 따라 해당 근거법령 조항을 현행화(별표 36)

바.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등 작성시 대표자성명 기재란의 작성 요령에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함
(별지 제20호의2 서식, 별지 제24호 서식, 별지 제27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측정결과를 영 제19조제1항제2호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로 자동전송하는 방z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자동전송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66조제3항제4호 중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조”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로,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검정”으로 한다.

별표 7의 오존의 주의보의 해제기준란 중 “0.12ppm”를 “0.10ppm”로 한다.

별표 10의3 제2호나목4)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옥내 및 야외도장

별표 11 비고 제8호 및 제9호 중 “경우 밋”을 “경우이거나”로 한다.

별표 13 제5호라.3) 중 “반출입이 함께”를 “반출 또는 반입이”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kW/h)”를 “(kWh)”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4호 중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한 배출시설 및 방z시설의 경우 제1호의 가동시간란 및 제2호가목의 방z시설명란·설치위치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로 전송된 측정결과로 이를 갈음”을 “영 별표2 제1호 각 목 외의 단서에 따라 전산전력계의 부착대상 시설에서 제외되는 방z시설은 제2호가목 중 전력사용량란을 작성하지 아니”로 한다.

별표 36 제2호다목 2)부터 5)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 차	2 차	3 차	4 차
2) 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과 관련된 다음의 경우					
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5항제1호	경 고	사용중지		
나)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5항제2호	조치이행 명령	사용중지		
다)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시설이나 조치가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5항제2호	개선명령	사용중지		
라)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5항제3호	사용중지			
3) 법 제44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와 관련된 다음의 경우					
가)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10항제1호	경 고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나) 제44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10항제2호	개선명령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조업정지 20일
다) 제44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으나 같은 조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법 제44조 제10항제2호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10일
라) 법 제44조제9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10항제3호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조업정지 30일	조업정지 30일

별지 제20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6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6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① (생략)	제36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별표 1의3에 따른 4종·5종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u>. 다만,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측정결과를 영 제19조제1항제2호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로 자동 전송하는 방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자동 전송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으며--</u>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66조(인증서의 발급 및 확인)	제66조(인증서의 발급 및 확인)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서 또는 인증생략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조 에 따른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청

5.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 ~ 3. (현행과 같음)

4.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 ----- 검정 -----

5. (현행과 같음)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실주소			사무실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대표자주소			전화번호						
신고 내용	업종명(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코드)			관리대상물질						
	설치예정일			년	월	일	가동시작예정일	년	월	일
	비산배출시설									
	비산배출 시설	세부시설	주요 배출공정	관리대상 물질	규모	수량	주요 시설관리기준 적용내용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									
	비산배출 시설	세부시설	주요 배출공정	배출가스 처리시설	규모	수량	기타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 (시설관리기준 제외사유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제품생산 공정도 및 비산배출시설 설치명세서 1부 2. 비산배출시설별 관리대상물질 명세서 1부 3.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서 1부 4. 별표 10의2 제1호가목3)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적용 제외 시설의 목록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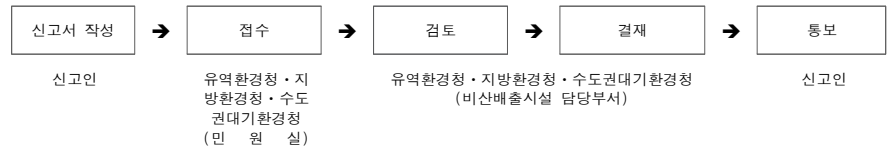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요령

1. 대표자성명 기재란에는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하여도 됩니다.
2. 기재할 내용이 많은 경우 세부내용을 붙임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휴대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설치기간(공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발생사업		
발생사업	대상사업	규모

비산먼지 등 발생억제시설 및 조치사항	
배출공정	주요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발생 사업 등(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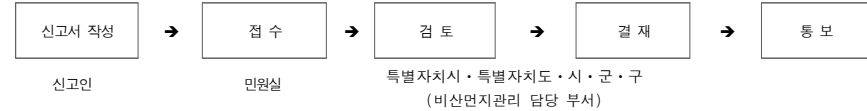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 건설업만 제출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1.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3.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저감대책	수수료 없음
------	---	-----------

작성요령

대표자성명 기재란에는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하여도 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실주소			사무실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대표자주소			전화번호	
신고 내용	업종			대상물질	
	설치예정일 년 월 일			가동시작예정일 년 월 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억제·방지시설				
	배출시설명	공정별	규모 (단위)	수량	주요 억제·방지시설 및 조치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설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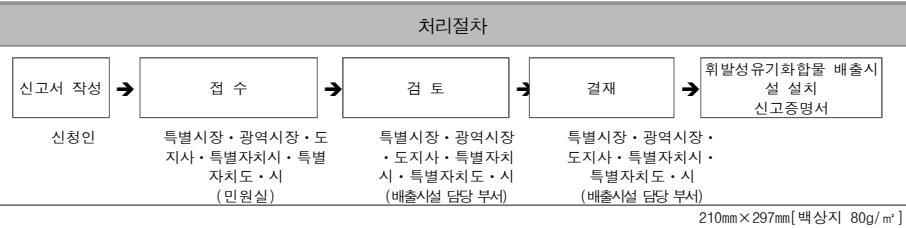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 귀 하

첨부서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억제·방지시설 설치명세서 각 1부	수수료 없 음
------	--	------------

작성요령

대표자성명 기재란에는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하여도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